

서울특별시의회
제23회 정례회

200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2002. 11. 28

서울특별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

200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01년 11월 28일

문화교육위원회

1. 소관부서 예산안 및 심사경과

1) 예산안

200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2. 11. 7

나. 회부일자 : 2002. 11. 8

다. 상정일자

- 제23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02.11.28)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서울시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이기호)

-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1,427억원으로서 2002년도 본예산 대비 11.5%, 4,258억원이 증가되었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대비 0.2%, 99억원이 증가되었음.

- 국가부담수입은 전년도 보다 0.2% 증가한 1조 9,940억 1,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8.1%를 차지하는데,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5.6% 감소한 1조 998억 6,2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이 9.3% 증가한 8,780억 2,100만원, 국고지원금이 22.7% 감소한 161억 2,900만원임.
-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전년도 보다 4% 증가한 1조 8,698억 3,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5.1%를 차지하는데, 그 내용은 법정전입금이 4% 증가한 1조 8,570억 8,500만원으로, 교원봉급전입금 4,131억 4,100만원, 담배소비세전입금 2,319억 5,300만원, 시·도세전입금 2,242억 4,600만원, 지방교육세전입금 9,877억 4,500만원이며, 비법정 전입금은 공공도서관운영비, 청소년육성종합계획 추진사업비, 학생중식비 등으로 127억 4,800만원임.
- 자체수입은 전년도 보다 7.5% 감소한 2,761억 3,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7%를 차지하는데, 이는 2002년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에 따라 1,2학년 수업료를 면제하기 때문이며, 그 내용은 재산수입 52억 7,5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1,931억 5,6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67억 1,600만원, 잡수입 109억 9,000만원, 이월금 600억원 임.
- 주민부담수입은 전년도 보다 23.2% 감소한 28억 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1%를 차지함.
- 인건비는 전년도 보다 6.6% 증가한 2조 3,431억 1,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6.6%를 차지하며, 복리후생비 인상분과 교원증원분은 교육 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되지 않아 금회 미반영하였음.

- 기관운영비는 전년도보다 2.3% 증가한 262억 6,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6%를 차지함.
- 학교운영비는 경상운영비를 전년도보다 8.5% 증가한 2,145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학교운영비를 689억 4,3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최대한 증액 지원하였으며, 전체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음.
- 사학재정결합지원금은 전년도보다 8.1% 증가한 5,785억 1,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4%를 차지하며, 인건비 및 학교경상운영비를 공립 수준으로 보전하고,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에 따라 1,2학년 수업료를 면제 하기 때문에 증가율이 높음.
- 교육사업비는 전년도 보다 5.2% 감소한 2,921억 7,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분야별로 보면,

- 학교 현장의 내실화 지원에 758억 7,600만원을 편성하여 꿈을 실현 할수 있는 소질·적성계발교육전개(149억 4,500만원), 지속적인 수업·평가방법 혁신(133억 2,800만원), 학교교육현장지원(340억 7,800만원), 가정과 연계한 체험중심의 인성교육내실화(62억 2,800만원), 독서 교육강화(72억 9,700만원), 등에 사용하겠으며,
- 교육의 전문성 신장 및 복지향상에 184억 700만원을 편성하여, 교육 전문성 신장(163억 1,500만원), 교육복지·사기진작(20억 9,200만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 지식정보화 교육 및 실업교육내실화 지원에 891억 1,700만원을 편성하여, 실업교육내실화(188억 2,500만원), 지식정보화능력 함양(690억 3,400만원), 과학교육의 내실화(12억 5,800만원) 등에 지원하겠으며,
 - 교육의 부문별 균형발전지원에 793억 800만원을 편성하여, 국제 교육 교류확대(19억 9,500만원),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773억 8,500만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 기타 분야에도 293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시설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9.1% 감소한 4,937억 4,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1.9% 차지하는데,

분야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학교시설에 2,769억 3,100만원을 편성하여, 학교신설 45교(2,552억 7,300만원), 교실증축 89실(123억 7,800만원), 강당·다목적실 7교(92억 8,000만원) 등에 투자하겠으며,
- 교육과정개편시설에 608억 5,700만원을 편성하여, 공립학교 97교 523억 5,700만원, 사립학교 21교(85억원)를 시설하겠으며,
- 교육환경개선에 1,268억 3,600만원을 편성하여, 노후교실 개축 24교(626억 4,900만원), 화장실보수 94교(167억 300만원), 조도개선 135교(108억 4,700만원), 대수선 보수 402교(286억 4,100만원), 학생용 사물함 116,251조(32억 3,900만원), 학생용 책·결상 90,000조(47억 5,700만원) 등에 사용하겠으며,

- 행정 및 지원기3관 시설에 166억 9,300만원을 편성하여, 행정기관 시설 7건(66억 3,400만원), 지원기관 시설 9건(100억 5,900만원) 등의 시설개선에 사용토록 하였고,
 - 기타 시설사업비에 학교급식시설비 84억 2,900만원을 포함하여 124억 2,900만원을 편성함.
- 지방채 상환은 전년도 보다 39.8% 감소한 1,145억 1,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8% 차지하며, 2003년에 상환해야할 금액은 2,607억 7,300만원이고, 나머지 1,462억 6,000만원은 국가로부터 교부되면 상환할 예정임.
 - 예비비는 전년도 보다 64.1% 감소한 11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0.2%를 차지하는데, 전년도에는 보수예비비(보급조정수당 : 본봉의 30%)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국가로부터 보급조정수당이 아직 교부되지 않아 편성하지 못하였음.

3. 예산안 주요내용

가. 예산총칙

-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각각 4조1,427억8천6백만원으로 함.
- 일시 차입금 한도액은 4,142억7천8백만원으로 함.
(전체 예산의 10%이내)

-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4,142억7천8백만원으로 함.
(전체 예산의 10%이내)
-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 사업은 없음.
- 예산의 전용은 봉급·상여금·정액수당, 시설비(시설비에 부수되는 설계비와 보상비에 전용할 경우를 제외한다), 상환금(단,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등 3개 비목의 예산은 타비목에 전용할 수 없고, 3개비목 상호간 전용은 가능함.
또한, 회계연도 경과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및 특수 업무활동비에 충당하기 위하여는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음.
- 예산의 이용은 공무원 보수, 계약직 공무원·기타직 및 수당직 직원 급여, 세금·공과금·배상금·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재해대책비, 반환금, 시설비(학생수용계획 변경에 의한 학교시설비에 한한다.)등 6개 비목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장·관·항 사이 상호 이용할 수 있음.
- 목적지정교부금 처리 등과 관련 회계연도별 최종 추가편성 이후에 교부되는 교부금, 보조금 등은 예산처리가 곤란하므로, 기정예산으로 간주 “목적지정 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함.

나. 세입예산

- 200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보다 99억7천2백만원 (0.2%) 증가된 총 4조1,427억8천6백만원으로 편성됨.

- 세원별로 보면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지원금으로 전년도보다 41억7천9백만원(0.2%)이 증가한 1조9,940억1천2백만원이며, 이는 전체 세입의 48.1%을 차지하는 규모임.
- 서울시 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해 서울시 일반회계로 부터 전입되어 충당하는 전입금으로,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학교의 교원봉급분, 담배소비세 전입금(담배소비세 수입의 45%)과 시세전입금(시세총액의 3.6%) 및 지방교육세등 법정전입금과 도서관 운영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지원비, 저소득 학생중식비, 청소년육성종합계획비등이 비법정전입금이 있는바 이 두항목을 합한 총 전입금은 1조 8,698억3천3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19억3천3백만원(4.0%)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세입의 45.1%을 차지하는 규모임.
- 자체 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재산 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합한 총액은 2,761억3천7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22억9천1백만원(△7.5%)이 감소했으며, 전체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7%임.
 자체수입의 주요 증감요인은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333억5천만원(△14.7%),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3억9천만원(△5.5%), 잡수입 35억8천만원(△24.6%)이 각각 감소된 반면, 재산수입 16억6천만원(46.2%), 이월금 133억7천6백만원(28.6%)이 각각 증가함.
- 지방교육채는 발행하지 않고 과목만 존치시킴.
-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 지원금은 28억3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4천6백만원(△23.1%)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체 세입의 0.1%을 차지하는 규모임.

2003년도 세입예산안

(단위 : 억원)

구 분		2003년도 예산액편성액		2002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비율 (%)
			점유비(%)		점유비(%)		
합 계		41,427	100	41,328	99.9	99	△ 0.2
국가부담수입	소 계	19,940	48.1	19,898	48.1	42	△ 5.6
	교부금	10,999	26.5	11,657	28.2	△ 658	9.3
	양여금	8,780	21.2	8,033	19.4	748	△ 22.7
	국고지원금	161	0.4	208	0.5	△ 48	0.2
전입금	소 계	18,698	45.1	17,979	43.5	719	4.0
	법정전입금	18,571	44.8	17,852	43.2	719	4.0
	비법정전입금	127	0.3	127	0.3	0	0
	지원금	0	0	0	0	0	△ 100.0
자체수입	소 계	2,761	6.7	2,984	7.2	△ 223	△ 7.5
	재산수입	53	0.1	36	0.1	17	46.2
	입학금및수업료	1,931	4.8	2,265	5.5	△ 334	△ 14.7
	사용료및수수료	67	0.1	71	0.2	△ 4	△ 5.5
	잡수입	110	0.2	146	0.4	△ 36	△ 24.6
	이월금	600	1.5	466	1.1	134	28.7
지방교육세		0	0	430	1.0	△ 430	△ 100.0
주민부담수입및기타		28	0.1	37	0.1	△ 9	△ 24.3

다. 세출예산

- 세출예산은 전년도 4조1,328억1천3백만원보다 99억7천1백만원(0.2%) 이 증가된 4조1,427억8천5백만원으로 편성됨.
- 세출예산의 주요 부문별 증감사유를 보면,
 - 인건비가 처우개선비 5.47%를 반영하여 1,458억9천만원 증액
 - 명예퇴직수당은 전년도 수준으로 인원수를 동결하여 55억4천3백만원 편성
 - 기관운영비가 6억7천9백만원(2.3%)증액
 - 학교경상운영비가 전년대비 8.5% 인상하여 229억2천2백만원 증액
 - 사학재정결합지원비가 전년대비 학생수 감소에 따른 증가분과 중1,2학년 의무교육실시에 따른 증가분 및 교직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가분등 8.1%를 반영하여 432억4천9백만원 증액
 - 교육사업비는 92억7천5백만원(3.3%) 증액
 - 시설비는 1,166억6백만원(△19.1%) 감액
 - 지방채상환은 758억2천만원(△33.9%) 감액
 - 예비비는 196억1천8백만원(△64.1%) 감액 편성됨.

2003년도 세출예산안

(단위 : 억원)

구	분	2003년도 예산액편성액		2002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비율 (%)
			점유비(%)		점유비(%)		
합	계	41,427	100	41,328	100	99	0.2
인	건 비	23,376	56.5	21,917	53.1	1,459	0.7
명	예 퇴 직 수 당	55	0.1	55	0.1	0	0
기	관 운 영 비	262	0.6	256	0.6	6	2.3
학	교 경 상 운 영 비	2,835	6.8	2,605	6.3	230	8.8
사	학 재 정 결 함 지 원 비	5,785	14.0	5,353	12.9	432	8.1
교	육 사 업 비	2,922	7.1	2,829	6.9	93	3.3
시	설 비	4,937	11.9	6,103	14.8	△ 1,166	△ 19.1
지	방 채 상 환	1,145	2.8	1,904	4.6	△ 759	△ 39.9
예	비 비	110	0.2	306	0.7	△ 196	△ 64.1

4. 검토의견(전문위원 윤병국)

가. 총괄

- 200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4조1,328억1천3백만원보다 99억7천2백만원(0.2%)이 증가된 4조1,427억8천5백만원으로 편성됨.
 - ※ 2002년도 제2회 추경(총규모 4조 2,028억3천2백만원) 대비 1.4%(600억4천7백만원) 감소
 - ※ 2002년도 제2회 추경은 2002.11.28 상정예정

세입예산은

국고가 전년도 보다 41억7천9백만원(0.2%) 증가한 1조9,940억1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바, 그 내역을 보면 지방재정교부금이 658억3천1백만원(△5.6%) 감소가 되고, 지방교육 양여금이 747억6천2백만원(9.3%) 증가되었으나, 국고지원금 내시액은 47억5천2백만원(△22.7%) 감액 조정됨. 국고가 전체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8.1%임.

서울시 전입금은 교원봉급전입금, 지방세 증가분과 담배소비세 전입금 감소분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719억3천3백만원(4.0%)이 증가한 1조 8,698억3천3백만원으로 편성됨. 서울시 전입금이 전체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5.1%임.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재산 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합한 총액은 2,761억3천7백만원으로 전년보다 222억9천1백만원(△7.4%)이 감소했으며, 전체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7% 임.

주민(기관등) 부담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부담금이 주종으로 전년보다 8억 4천6백만원(△23.1%)이 감소한 28억3백만원이며 전체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1%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처우개선비 5.47% 반영하여 1,458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내시되지 않은 복리후생비 인상분, 봉급조정수당 여건 개선 증원분 등 약 1,250억원을 반영치 못하고, 학교경상운영비와 사학재정결합지원비가 전년대비 8.5% 인상을 반영하여 각각 229억2천2백만원(8.8%), 432억4천9백만원(8.1%) 증액 편성됨.

사업예산중 시설사업비는 전년보다 1,166억6백만원(△19.1%) 감액 조정되고 교육사업비는 92억7천5백만원(3.3%)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채상환을 위한 경비가 758억2천만원(△39.9%) 감액 편성되고, 예비비가 196억1천8백만원(△64.1%) 감액 편성됨.

나. 주요 부문에 대한 검토의견임.

□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구조와 관련

-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의 세입구성을 보면, 국고수입이 48.1%, 서울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수입이 45.1%, 자체수입이 6.7%로 국고 등 의존 수입이 93.2%에 이르고, 세출구성에 있어서도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등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7.4%에 이르고 있어 교육 자치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임.

물론 이와 같은 상황은 법적, 제도적인 측면에 기인하는 것이나, 지

방자치가 재개된 '91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되풀이되는 현상으로 출범 당시부터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가 되었으나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한정된 재원으로 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뒷받침하고, 교육여건개선 등 늘어나는 교육투자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진정한 지방교육자치를 이룰 수 있는 안정적이고 자주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직성 경비를 줄이고, 교육여건개선과 향상을 위한 투자사업비 부문으로 재원을 배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운용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서울시 전입금과 관련하여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1항에 의거 서울시로부터 비의무공립학교 교원봉급전액, 담배소비세의 45%, 지방세 총액의 3.6% 그리고 지방교육세전액을 교부 받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서울시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전출금의 편성금액과 교육청의 서울시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의 편성금액은 서로 일치해야 함.

즉, 서울시와 교육청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교부되는 금액은 서로 일치시켜야 할 것이나 편성된 내역을 보면,

- 지방교육세에서는 10억7천1백만원,
- 지방세 지원금액은 7천7백만원,
-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비 △50만원
- 중식지원비 △10만원 등 총 11억4천7백40만원의 차이가 발생 함.

즉, 교육청의 전입금 예산편성금액이 서울시의 교육청에 대한 전출금 예산 편성금액보다 11억4천7백40만원이 과소 계상됨.

이 같은 현상은 매년 양기관의 전출입 예산간의 차이가 발생하여 매년

지적되어온 사항으로써 교원봉급이나 담배소비세, 도서관 운영비, 청소년 육성지원비 등 다른 항목에서는 일치하고 있으나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일치하지 않고 있음.

- 이와 같이 양 기관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교육청 예산은 지방교육 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교육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기 위하여 서울시 예산보다 미리 확정되기 때문임. 그러나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세수 전망은 어차피 예상치이므로 반드시 일치 할 수 없을 것이나 양 기관 간에 업무협조 차원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 같은 차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로부터 지원되는 도서관운영지원경비 역시, 도서관 이용층이 상당부분 지역 주민이고, 도서관 운영 형태도 독서제공이나 문화 교실 운영 등 시민을 위한 교양강좌 위주로 활성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서울시가 이에 대한 운영비 일정부분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대한 논의와 함께 도서관운영경비의 지원이 확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서울시 공공도서관 21개 운영비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약 160억 원이 소요되는데, 내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지원되는 공공도서관 운영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92억5천만원임.

※ 지원근거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2조 제1항

□ 교육위원회비 편성과 관련하여

- 교육위원의 일선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비로 내년도에 4천5백만원이 신규로 편성됨.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및 교육위원회 경비는 일정항목에 대하여 일정액수만을 편성토록 하고 이외의 경비는 편성을 금지하도록 매년 예산

편성 지침으로 시달되고 있음.

- 동 사업은 2001년도에 처음 편성되었으나, 지침에 위반될 뿐만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투명성 보장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금년도에는 전액 삭감되었던 예산이나 내년도에 재차 편성된 사안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맞는 예산운용이 필요함.

□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과 관련된 내용임.

-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어 조정된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교원안전망구축사업과 관련된 예산 14억4천6백만원을 감액한 것을 비롯하여 총13건의 사업에서 213억5천3백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감액된 예산으로 공·사립 환경개선사업 등 총12개 사업부문에 반영함. 그러나 공·사립 환경개선사업 부문에 반영된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각급 학교에 무려 268개의 사업을 위해 145억3천7백만원을 증액 반영함.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예산을 심의하여 확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나 최종 확정권은 지방의회에 있음. 교육위원회가 교육계 인사로 구성된 전문성을 지닌 심의·의결기관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대규모로 증·감 조정되어 의결된 경우는 드문일이며 의결된 내용 자체도 새로운 정책도입이나 변경과는 무관한 학교단위의 소소한 환경개선사업에 집중 배정하고 있어, 교육청 집행부의 예산편성 우선순위나 지원기준에 크게 어긋날 가능성이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학교운영지원경비와 관련된 내용임.

- 동 예산은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학교에 일률적으로

총액 배분하는 경비로 내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8.5% 인상율을 반영하여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230억원, 사립학교는 35억원이 증액 반영됨.

이 같은 학교운영 지원경비의 지원기준은 '95년도 정부에서 학교규모나 교사수, 학생수, 학급수 등을 고려하여 개발한 각급 학교 표준교육경비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음.

- '97년도 이전까지는 이 표준교육경비의 9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지원해 오다가 IMF 이후 60~70%로 하향조정 되었으며, 다시 작년도에는 6%의 인상율을 반영하여 표준교육경비의 100%를 반영을 하는 등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기준이 일정치 못하였음.
-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 예산대비 8.5% 인상율을 반영하여 예산에 계상함. 학교운영지원경비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경직성경비에 해당하고 그 규모도 교육청 전체예산에 약 10%에 육박하는 매우 중요한 지출항목임.

따라서 이 경비의 합리적인 지원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바, '95년도에 산출된 이 표준교육경비가 그 동안의 물가 상승률이나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증가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학교운영지원경비의 증가율 조정이 당해연도의 예산 증가율을 고려치 않고 정책 결정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시혜적인 정책으로 인상율을 정하는 느낌을 받고 있음.

- 따라서 자체적으로 서울실정과 제7차 교육과정을 감안한 각급학교 표준교육경비를 산출한 후 당해연도 예산 증감율에 연동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 교육정책 용역사업비와 관련하여

- 실업교육 발전연구지원과 서울교육정책연구프로젝트를 위한 용역사업비가 각각 1억4천만원, 2억원이 반영됨.

동예산은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된 사업으로 실업교육 발전연구용역비는 4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으로, 서울교육정책연구프로젝트는 신규로 반영된 사업임.

- 용역사업의 경우, 서울시나 교육청에서 여러분야에서 활발한 용역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과제선정이나 사후활용도 등의 측면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분야임.
- 이번에 교육위원회서 반영한 동사업 역시 그 구체성이나 필요성에 대하여 의문시 될 뿐아니라, 서울교육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 향후 집행과정에서 임의적으로 다른 정책과제로 변질될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등 그 구체적 타당성에 대해 검토가 요망되고 굳이 용역사업을 수행한다고 하면 실업교육부문을 서울교육 정책연구프로젝트에 포함하여 수행하는 것이 타당함
용역비 역시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됨.

□ 서울체육중학교 건립과 관련

- 서울체육중학교을 신설하기 위한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43억3천만원이 편성됨.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신설은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에 의거 설립되나 동 중학교의 설립은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 조례가 계류되어 있는 상황임.

- 물론 동사업이 지방비가 아닌 국고로 지원되는 예산인만큼 지방의회가 관여하는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조례안의 심의, 의결권과 총돌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통일체험교육과 관련하여

- 전년대비 84.3% 증가한 11억4천4백만원이 편성됨.

동 예산은 2001년부터 금강산 통일체험 교육을 주축으로 편성되기 시작하여 3년째 지속되어온 사업으로 현장체험중심의 통일교육을 통해 북한을 이해하고 민족공통체의식을 함양키 위한 목적을 갖고 있음.

- 처음 출범당시 정부가 주도적으로 실시하다가 자치단체까지 확대된 사업으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따른 국제동향과 연결된 사업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최근에 북한 핵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북한을 둘러싼 주변 우방국의 시각이 급변하고 이 문제와 관련한 국민시각 역시 현격한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 그리고 국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만큼 동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가 요망됨.

□ 냉·온정수기 보급사업과 관련

- 동 예산은 2001년도에 처음 시작하여 금년도에 3년째로 접어든 사업으로써 전년도와 유사한 24억6백만원으로 편성함.
- 동 사업은 학생들에게 청결한 음료를 제공하여 학습활동에 적절한 교육 환경을 조성코자하는 사업으로써, 초·중·고를 대상으로 5학급당 1대 규모로 정수기렌탈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그러나 동사업은 출범당시부터 서울시가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투자를 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사업을 실시하는 문제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업임.

- 따라서 서울시 맑은물 공급사업과 정면배치되는 동 사업에 대하여 예

산을 통하여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

□ 사립유치원 지원과 관련하여

- 내년도에는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으로 34억,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9억2천만원이 편성됨.

동 사업은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하여 법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국고 50%, 지방비 50%로 각각 지원됨.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2002년도 10월부터 추경을 편성하여, 구립과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월 10만원씩 보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사립유치원이 초·중등 교육법상 학교로 구분되어 있으나, 보육시설과 유사한 시설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향후 동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보조와 관련,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 특기적성 교육과 관련하여

- 동 사업은 정규수업외에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고 취미나 특기를 신장시킬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유사한 금액인 34억9천2백만원이 편성이 됨.

- 동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방과후에 다양한 특별활동으로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이나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입시위주의 현행 대입체제로 인하여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기히 지적되고 있는 사업으로, 이러한 비효율적인 운영방법이 정착화하기전에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학생 참여율을 높이

는 방안이나 학교교육등과 연계하여 동사업을 활성화 하는 방안등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국고보조사업과 관련

- 국고보조사업은 인적자원부가 국가정책사업을 전액 국비 또는 일정 비율의 지방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는 인적자원부가 국비 전액을 투입하여 추진하다가 점차 국비를 축소하거나 전액 지방비를 부담케 함으로써 취약한 재정기반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음.

그리고 보조비율도 지침으로 되어 있어 교육부가 임의로 조정하고 있는 실정임.

-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기 적성교육활동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99년도 67억, 2000년도 57억 전액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였으나, 2001년부터는 전액 지방비로 부담케 함.

이런 경우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하여 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사업평가가 반영되기 어렵고, 일정기간 지속되어 오다가 보조금 중단의 사유로 사업을 중지하지 못하는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요망됨.

□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비 관련

- 교육사업비중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로 120억원을 편성한 내용임.

200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특별교육 재정수요지원비는 회계연도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체예산의 0.3% 이내로 계상토록 한 지원경비임.

- 동예산은 전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상 0.1%를 계상되도록 하여 41억원이 반영되었으나, 내년도에는 0.3%로 상향조정하여 120억원이 반영됨.
- 동예산은 별도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비비와 중복적성격이 강하고 그 지출내역도 살펴보면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지출된다고 볼 수 없는 내용의 사업들이 상당수 있어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봄.

□ 예비비와 관련

-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토록 하고 있으며, 편성규모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예산총규모의 0.5%이상을 계상토록 하고 있음.

따라서 내년도 예비비규모는 200억이상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훨씬 못미치는 11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음.

- 당초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원안에서는 16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증액사업에 대한 재원부족으로 예비비가 대폭 삭감되었음.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한 예비비 규모가 편성되어야 함.

5.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7조(세출의 재원), 제8조(지방채의 발행), 제36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등)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2(지방채의 발행대상 등), 제7조(지방채의 종류등)

- 지방자치법 제115조(지방채무와 채권관리), 제121조(추가경정예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지방채 발행계획)

6. 주요 지적사항

- 없음

7. 소위원회 심사보고서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8. 심사결과

- 1) 세입 : 수정가결
- 2) 세출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따로붙임 : 200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서울특별
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 심의 의결내역